

한의학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규정

제정 2016. 08. 30.

제2차 개정 2024. 11. 20.

제1조(명칭) 위원회는 한의학대학교육과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학대학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적 지식과 학업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3., 2024.11.20.)

제3조(소재)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학대학(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8.11.23)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23., 2024.11.20.)

1. 한의학 교육 정책의 수립(개정 2024.11.20.)
2. 교육과정의 개발·편성·개편·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0.)
3.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0.)
4.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0.)
5.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24.11.20.)

제4조2(독립성)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신설 2024.11.2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한의학과 학과장, 한의예과 학과장, 한의학교육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산업체인사 및 학생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2024.11.20.)

② 위원장은 한의학대학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3., 2024.11.20.)

③ 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7조(연구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지원) 위원회는 소정의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기획예산부-671, 2016.08.30)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581, 2018.11.23)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476, 2024.11.20)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